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재개443.2-266	(전화번호 725-7661-9)	전결규정 4 조 1항 국 장 전결사항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결재 1984. 8. 22 도시계획국장		
보존연한	84. 8. 23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전결	84. 8. 23 고시제 4P6 호	협법무담당관(도시안심사) <i>김진환</i>
	재개발과장 <i>7/6</i>		재개발행정계장 <i>서오</i>
	재개발사업2계장 <i>서</i>		재개발계획계장 <i>서오</i>
기안책임자	김진환	84. 8. 20 (방급원)	조 재개발사업
경유수신참조	각안참조	발신	시장 통계
제 목	도심지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 정정 고시		
(제1안) 내부 결재			
1. 서울시고시제472호(84.8.9)로 건폐율 40%, 용적율 66% 지하5층, 지상15층으로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결정된 다동제18지구 재개발지구			
2. 결정고시 당시 착오로 인하여 건폐율 45%를 안 40%로			
고시 되었는데			정서
3. 이를 정정 고시보여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가. 건축 계획 변경 결정 조서			
	구 분	건 폐 율	비 고
	기 정	40%	
	정 정		
(제2안)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			발송
서울도심지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정정 고시			1984. 8. 23 담당자: 법세계장, 법무담당관

1. 서울시제472호(84.8.9)로 재개발사업 변경 결정된 다동 제18	
지구 에대한 사업 계획 변경 결정 사항 중 견뎌움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한다.	
1984. 8.	
서울특별시장	
가 변경 내용	
(제3안) (제1안 추가)항 이기시행)	
(제3안)	
수신	건설부장관
참조	도시개발과장
제목	등 권
1. 서울특별시고시제7호(84.8.9)로 변경 결정 고시된 다동 제18지구	
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다동 제18지구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중	
견뎌움에 대하여 정정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.	
첨부:	고시문 사본 1부
(제4안)	
수신	총무처장관, 공보관 (4608)
제목	관(시)보 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재개발과
1.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	
바랍니다.	
가. 게재 종별: 고시문	
나. 게재 건명: 도시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정정 고시	
다. 게재 근거: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8조	
첨부:	고시문 사본 2부
(제5안)	
수신	중구청장
참조	도시정비과장

